

# 안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안

의안 번호	801
----------	-----

제출년월일 : 1999. 8.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폐지이유

- '95. 5. 22 안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의 근거 규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3이 삭제되고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에 농지개량조합구역 외에 있는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있어
-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동 조례 폐지 ”

## 폐지조례(안) : 별첨

## 기타 참고 자료

-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 별첨
- 기존의 조례 : 별첨

## 안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안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편 경제통상 제4장 농어촌진흥 안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 안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 안산시조례 제82호  
1986. 1. 1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농근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항에 규정한 시설로서 농업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또는 농지개량조합(이하 "농조"라 한다)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농지개량제"라 함은 별표 농지개량제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동리자들로써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구역"이라 함은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제2조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시설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시설물 관리요령"에 의한다.

**제4조(감독기관)** ①시장은 농지개량제를 감독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구역면적 99,174제곱미터 미만의 농지개량제에 대한 제1항의 감독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친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이 감독한다.

**제5조(시설부지의 등기등)** ①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1. 시설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수산부로 표시한다.

제3편 경제풍상 제4장 농어촌진흥 안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 2. 시장이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안산시"로 표시한다.
- 3.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안산농지개량제"로 표시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상황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농지개량제) ①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역단위로 5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지개량제를 조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제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규 약

나. 계원명부

다. 구역내 토지원부

라. 대표자 선출에 관한 회의록

마. 기타 필요한 서류

③제2항의 등록신청을 받는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지개량제 등록부에 등록한다.

④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농지개량제 등록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상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농지개량제의 의무) 농지개량제는 그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다.

1.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농지개량제 자체의 부담으로서 매년 3월과 10월중에 그 시설의 원상유지를 위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시설보존을 위하여 항상 보호 감시를 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 되었을 때에는 자력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점검 및 복구) ①시장은 매년 1회이상 시설의 현황 및 그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3편 경제통상 제4장 농어촌진흥 안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②천재지변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은 전 각항의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농지개량계에 복구를 명령하고·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부과) ①농지개량제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원으로부터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가. 정상적 유지관리 비용

나.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용(재해복구비 포함)

다. 시설의 감가상각 적립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는 당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 시장과 농지개량제장이 공동 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제3항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사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경비부과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한도액은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1. 정상적 비용의 부담은 실비전의

2. 복구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3.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구 연수로 제한 잔존기간의 해당액

제11조(경비징수방법)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서류비치) 시장은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시설의 부담금에 관한 장부 및 서류

3. 동기에 관한 서류

4. 농지개량제 등록부

제3편 경제통상 제4장 농어촌진흥 안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 5. 농지개량계 규약, 제원부 명부 구역안 토지대장 및 회의에 관한 서류
- 6. 시설대장 및 1,200분의 1 구역도
- 7. 기타 필요한 서류

제13조(시설의 용도 폐지) ①농지개량계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용도 폐지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1. 구역안 농경지의 타목적 사용으로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 2. 대체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의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유시설인 경우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용도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농지개량 해산) ①시장은 농지개량계의 설립목적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지개량계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농지개량계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제85조제86조 내지 제92조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농지개량계의 장부 및 서류일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조직된 농지개량계(수리계 또는 농지개량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조례에 의하여 조직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는 이 조례 시행후 2월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